

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순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6. 13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545호로 2025년 5월 30일 이순우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과 폐기물 등의 수거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나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의2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5. 6. 3.~2025. 6. 10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「폐기물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(폐의약품, 폐농약 등 포함)을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,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·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‘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’ 및 ‘추진성과를 평가’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폐기물관리법」이 일부개정(개정2017. 11. 28., 시행 2018. 5. 29.)되었음.
  - 이에 따라 영등포구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음.
- 구민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해 조례상 명확히 정의하고, 처리방법 및 수거주기를 구체화함으로써, 생활계 폐기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·처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전임.

#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제2조(정의)제10호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취지인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.
- 제10조의2(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)제1항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, 구청장에게 처리계획을 수립하고,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,

- 제2항은 처리방법에 관하여 구체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 하였고,
  - 제3항은 수거주기를 명시하면서도,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별표7은 「2025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계획」에 따라 폐비닐의 분리배출을 명문화하여 선별률을 향상하고,
- ‘물로 헹구는’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종량제봉투로 반입되는 폐비닐의 양을 줄이고,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한 것으로,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르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.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처리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, 관련 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·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, 폐비닐의 분리배출 기준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폐비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## 1 폐기물관리법

**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**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**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**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)

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,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·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##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**제16조의2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**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4. 30.>

1. 폐농약
2. 폐의약품
3.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
4.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[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

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(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(天然放射性核種)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
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